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1절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의 특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식회사일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설립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되,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1. 회사의 설립

① 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이란 회사는 하나의 단체(영리사단 : 상법 제169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회사는 하나의 법인(상법 제171조 제1항)을 성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회사(단체)의 형성 요소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서 회사의 실체가 형성되면 등기로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며, 회사의 실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현상이 '회사의 성립'인 것이다. 이러한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행한 때(상법 제172조)에 성립하는 것이다.

- ① 단체의 근본규칙인 정관 작성,
- ② 단체의 구성원이자 단체에 대한 출자자인 사원(주주) 확정,
- ③ 단체가 활동하기 위한 기관 구성

2.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로서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① 정관작성의 특색

정관은 주주가 되려는 자 전원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사원확정의 특색

법인의 주주는 다수일 뿐 아니라 그 변동이 자유로우므로(상법 제335조 제1항) 법인의 설립시에 주주를 정관에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당하다.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물출자자 성명은 정관에 기재) 정관 외에서 발기인·주식청약인의 주식인수에 의하여 주주가 확정된다.

③ 출자의 액 및 출자이행의 특색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 수는 정관에 기재) 주주 각자의 구체적 출자액은 정관 외에서(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확정되며, 설립을 위한 자본의 전액은 법인의 설립단계에서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④ 기관구성의 특색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도 선임이 가능하다.

⑤ 주도면밀·엄격성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상호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예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는 회사재산에 국한되므로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한 강행법 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준칙주의

회사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설립의 등기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고 회사로 성립되는 준칙주의의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 또는 면허는 필요가 없으므로 법인설립의 등

기를 함께 있어서 등기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게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준칙주의를 제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특징

① 준칙주의의 예외

기술지주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법인설립의 절차를 마친 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격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법 제36조의2 제2항).

- ① 주식화사업 것
- ② 임원(이사 및 감사)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현물출자에 대한 예외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때에는 이를 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에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36조의2 제3항).

③ 업무범위의 제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법 제36조의2 제4항)

④ 상호의 제한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반드시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은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36조의 4)

제2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방법

1. 기술지주회사설립의 방법

① 발기설립

이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방법으로서 발기인만이 출자하여 법인의 주주가 되는 형태이다.

법 제36조의2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발기설립하는 방법 내지는 산학협력단이 타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단이 없는 타대학과 공동으로 발기설립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② 모집설립

이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제3자(모집주주)가 인수하는 방법으로서 발기인은 물론 제3자도 출자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이 현물로 출자하는 기술의 평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모집설립의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발기설립의 개요

발기설립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즉, 발기인(상법 제288조)이 결정되고 발기인에 의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 ① 정관의 작성(상법 제289조)
- ②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 ③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 ④ 주금의 납입(상법 제295조)

- ⑤ 임원의 선임(상법 제296조)
- ⑥ 설립경과조사
- ⑦ 설립등기의 이행(상법 제317조)

3. 모집설립의 개요

모집설립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즉, 발기인(상법 제288조)이 결정되고 발기인에 의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 ① 정관의 작성(상법 제289조)
- ②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 ③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 ④ 주주의 모집(상법 제301조)
- ⑤ 모집주주의 청약(상법 제302조)
- ⑥ 발기인의 주식배정(상법 제303조)
- ⑦ 주금의 납입(상법 제305조)
- ⑧ 창립총회의 개최(상법 제308조)
- ⑨ 임원의 선임(상법 제312조)
- ⑩ 설립경과조사
- ⑪ 설립등기의 이행(상법 제317조)

제3절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절차

1. 정관의 작성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인의 정관 작성으로부터 시작한다.

I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이란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또한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상법 제289조 제1항)를 말하며, 발기인은 반드시 발행주식의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2)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의 자격에는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나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발기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다.

(3) 발기인의 수

발기인은 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발기인이 되는 것은 물론, 타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발기인 되는 것도 가능하다.

▣ 정관의 의의 및 작성방법

정관이란 조직·활동의 근본이 되는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292조).

▣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에 흡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89조).

① 회사의 목적 : 회사가 수행할 영업의 내용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아직 없음)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의 사용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반드시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36조의4).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는 정관의 변경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수를 말한다.

④ 1주의 금액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는 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로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일간신문 공고로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⑧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 사항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변태설립사항이란 상대적 기재사항의 일종으로서 법인설립시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된다.

① 발기인의 특별이익(제290조 제1호)

② 현물출자(제290조 제2호)

법 제36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기술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현물출자를 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산학협력단의 명칭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인 기술 · 수량 및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인수(제290조 제3호)

④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제290조 제4호)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I 주식발행사항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도 있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이 결정할 수도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종류와 수(제291조 제1호)

②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제291조 제2호)

② 발기인 전원의 동의

정관에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설립방법에 따른 절차

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의 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후에는 법인설립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절차 진행하여야 한다.

① 발기설립의 경우

(1)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법인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에 의한 인수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별도의 서면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출자의 이행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정하여진 납입기일까지 각 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의 전액을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전액 납입제)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한편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거나, 등기 ·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295조 제2항).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출자하는 기술에 관한 권리(지적재산권 등)를 기술지주회사에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96조 제1항).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

식의 1주에 대하여 1개(제296조 제2항)로 하며, 발기인 아닌 자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설립등기 전에 그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법 제3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설립경과의 조사

① 일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

이 경우 이사 및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를 하는 자·재산인수계약의 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으며(제298조 제2항), 만일 이사 및 감사의 전원이 조사·보고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이사는 조사·보고를 담당할 공증인 선임하여야 한다(제298조 제3항).

②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대체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㊂ 발기인의 특별이익, 발기인 보수, 설립비용 : 공증인 조사·보고

㊃ 현물출자, 재산인수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한편 산학협력단이 현물로 출자하는 기술에 관한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의 모집

모집설립의 경우 법인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방

법 등은 발기설립의 경우와 동일)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이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주의 모집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연고 모집, 공모 모두 가능), 공모에 의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50인 이상) 또는 모집금액(20억원 이상)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청약

주주가 되려는 모집주주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배정

모집주주에 의하여 모집주식의 총수에 대한 청약이 있으면 발기인은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배정이란 특정한 주식의 청약인에게 주식을 인수시킬 것인가의 여부 또는 얼마나 인수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배정방식을 사전에 미리 공표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배정을 할 수 있다. 주식의 배정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인은 주식의 인수인이 되며, 배정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305조).

(4) 출자의 이행

주식의 청약과 배정에 의하여 모집주식 총수의 인수가 완료되면 모집주주는 주식청약서에 게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장소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주주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 납입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재차 지정한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않으면 모집주주는 인수에 관하여 실권이 되고 발기인은 실권 부분에 관하여 다시 주주의 모집을 할 수 있다.

한편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와 절차가 동일하다.

(5) 창립총회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소집된 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 바,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

로 하여야 한다.

- ① 발기인으로부터 회사 창립에 관한 보고의 수령
-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③ 설립경과의 조사(발기설립과 동일)
- ④ 정관의 변경
- ⑤ 설립의 폐지
- ⑥ 기타

4. 설립의 등기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종료된다.

I 설립등기의 절차

(1) 등기의 시기

- 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설립경과조사에 따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 사항

법인 설립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② 자본의 총액
- ③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⑥ 지점의 소재지
- ⑦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⑧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⑨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⑩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 ⑪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⑫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⑬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 ⑭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⑮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등기의 절차

법인설립의 등기는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며(비총사건절차법 제149조), 법인설립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첨부하여야 한다(비총사건절차법 제203조).

- ① 정관
-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③ 주식 청약서
- ④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제291조)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⑥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⑦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 ⑧ 창립총회의 의사록
- ⑨ 이사 ·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⑩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⑪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② 설립등기의 효과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주식회사로 성립된다.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되며, 법인의 설립 중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기관이 되고,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 중에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한다(창설적 효력).

제4절 인가의 절차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설립하면서 별도로 법 제36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36조의2 제2항 2문), 시행규칙 역시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제5절 정관의 작성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는 산총법 제3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 2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주식회사일 것
 - ② 산학협력단이 설립 자본의 5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2. 산총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법 규정을 준용한다(산총법 제36조의9)
3. 따라서 상법의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되, '기술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이므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4. 한편, 산총법 제36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의 영리는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정관상 목적의 기재사항이 법령에 규정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한다.
5.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상호에는 상법 제19조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포함되는 동시에, 산총법 제36조의4에 따라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정관 작성에 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영한 표준정관은 별첨과 같다.

1. 현물출자

- 발행할 주식총수 40,000주, 설립시 발행주식수 10,000주, 1주의 가액 5,000원, 발기인 1인으로 단독 설립하는 경우

제6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다.

- ① 현물출자자의 명칭 :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② 출자목적인 재산 : (기술의 명칭)
- ③ 출자목적인 재산의 평가액 : 5,000만원
- ④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 10,000주

2. 목적 : 산촉법 제36조의2 제4항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만 기재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회사의 설립 · 경영관리
- 2. 위 제1호에 부수하는 업무

3. 상호 :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

제 1 조 【명 칭】

이 회사는 "00대학교 기술지주주식 회사"라 한다.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회사는 “OO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설립 · 경영관리
2. 위 제1호에 부수하는 업무

제 3 조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점(지소,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주식

제 6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다.

- ① 현물출자자의 명칭 :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② 출자목적인 재산 : (기술의 명칭)
- ③ 출자목적인 재산의 평가액 : 5,000만원
- ④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 10,000주

제 7 조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주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③ 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주

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와의 결의로 정한다.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가발행】

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 가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전환사채는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년도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

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명의개서】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주주의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전조의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 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일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주주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나누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23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 ③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기간,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전항의 통지사항을 제4조에 정하는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별지서식 제1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주주가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을 때
 2.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제28조 【의결권 행사의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의사록의 작성 비치】

- ① 총회의 의사에는 주주총회의사록(별지서식 제2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와 이사회

제31조 【이사의 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 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선임한다.
- ④ 이사회는 약간 명의 이사 아닌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부를 선임한다. 부사장 등의 간부는 대표이사 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의사록(별지서식 제3호)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감 사

제41조 【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제42조 【감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4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46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 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 총회 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2. 주주배당금
3. 임원상여금
4. 퇴직위로금
5. 기타 적립금
6. 차기이월금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시효의 완성으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사규제정】

이 회사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위임장

【별지서식 제2호】 주주총회의사록

【별지서식 제3호】 이사회의사록

【별지서식 제1호】

참석장

본인은 (주)OOOO 정기총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일 시 : OOOO년 OO월 OO일 (요일) OO:OO~OO:OO
장 소 : OO동 OO빌딩 OO층 대회의실

OOOO년 OO월 OO일

회사명:
대표명: (인)

주식회사 OOOO 귀중

대리위임장

본인은 _____ 를(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OOOO년 OO월 OO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일 시 : OOOO년 OO월 OO일 (요일) OO:OO~OO:OO
장 소 : OO동 OO빌딩 OO층 대회의실

OOOO년 OO월 OO일

회사명:
대표명: (인)

주식회사 OOOO 귀중

위임장

본인은 (주)OOOO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OOOO년 OO월 OO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일 시 : OOOO년 OO월 OO일 (요일) OO:OO~OO:OO
장 소 : OO동 OO빌딩 OO층 대회의실

OOOO년 OO월 OO일

회사명:
대표명: (인)

주식회사 OOOO 귀중

【별지서식 제2호】

주 주 종 회 의 사 록

(주)○○○○ 절기주주총회

20 년 월 일 현재

일 시 :		
장 소 :		
주식총수 :	명. 주식총수 :	주
출석주수 :	명. 출석주주 주식총회 :	주
제1호 의안 :○○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에 관한 건		

【별지서식 제3호】

이사회 의사록

개최일시 : 20 년 월 일

장소 :

출석이사 : 총 ○○명 중 ○○명

의장 :

의안(제 호) :

의결사항 :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의장대표이사	(인)
이사	(인)